

# 外國人の特許出願과 技術導入

## 技術移轉問題와 關聯하여



咸 淳 駿

<韓國科技研 技術導入相談센터所長:工博>

### ① 序 論

獨自의 技術開發態力이 부족한 開發途上國에서의 技術導入의 重要性은 많은 識者들에 의하여 累累히 強調되고 있다. 技術革新을 위한 手段으로써뿐만 아니라 經濟開發을 위한 技術도입의 促進 및 波及效果의 極大化는 개발도상의 立場에서 볼때 하나의 戰略手段이 되며 그 重要性은 再論할 餘지가 없다. 이러한 技術도입의 問題는 여러가지 次元에서 分析檢討할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技術移轉의 問題가 外國人特許權出願에 의하여 어떠한 影響을 받는지에 관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특히 이 問題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특허출원의 대부분이 外國인에 의한 것이며 우리나라도 近年 外國인 특허출원이 急激히 上昇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 外國인특허출원의 動機와 結果를 技術이전의 問題와 結付시켜 分析檢討하는 것은 一考의 價値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特許權實施의 根本目的은 재론할 餘지도 없이 發明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特許保有者 또는 그 繼承者에게 獨點의인 惠澤을 賦與함으로써 發明 및 革新活動을 촉진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특허권실시의 基本理念은 새로운 發明과 革新의 生産 및 企業活動으로 具體化되어 經

濟開發을 촉진 시키고 보다 나은 安樂한 生活를 營爲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工業上의 發明品에 대한 利用이나 權利를 發明者가 계승자에게만 獨點의 利益을 保障하는 것은 어느면에서 보면 發明품에 대한 共同利用을 制限하는 등 社會的 經濟的 浪費를 가져오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發明革新活動의 勸獎 및 촉진이라는 目標을 遂行함으로써 이와같은 經濟的 社會的 消費費用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는 前提가 특허권실시의 주요 목표라할 수 있다. 그러나 發明活動이 微弱하고 뿐만 아니라 發明된 新製品 또는 新製造方法을 經濟的 妥當性調査에 立脚하여 低廉하고 良質의 商品으로 具體化되는 企業活動(一名: 垂直性技術移轉)이 극히 微弱한 經濟開發途上國에서는 막대한 外國인특허출원의 의미를 技術도입이라는 側面에서 심사속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② 外國人特許出願現況 및 動機

일반적으로 경제개발도상국에서의 特許出願現況을 살펴보면 量的인 面에서 先進諸國을 따라 갈수 없다. 뿐만 아니라 大部分의 특허출원은 外國인 또는 外國企業이 차지하고 있다. 表 1에 나타나는 것 같이 1957~1961年間 先進諸國의 總特許登錄中 外國인이 차지하는 比率는 美

# 特 輯

〈表 1〉 總特許登錄中外國人에게 賦與된 特許比率 (1957~1961)

國 名	%	國 名	%	國 名	%
美 國	15.72	이탈리아	62.85	印 度	89.38
日 本	34.02	스 위 스	64.88	터 어 키	91.73
西 獨	37.14	스 웨 덴	69.30	이 집 트	93.01
英 國	47.00	벨 지 음	85.55	파 키 스 탄	95.75
프 랑 스	59.36				

國의 경우 15.7%, 日本의 경우 34%, 프랑스의 경우 59.4%인 반면 印度,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인에 의한 특허등록은 총특허등록중 90% 이상 96%까지 차지하고 있어 이들 國家들의 內國人에 의한 발명활동은 대단히 미약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南美 치레의 경우 1937년에 등록된 총 특허중 내국인에 의한 특허가 34.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67년에는 겨우 5.5%로 激減하여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대단히 活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類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表 2에서 보는바 같이 1976년 한해동안 총특허등록 3,261건중 외국인에 의한 특허등록수는 1,825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7년에는 62.5%로 증가하더니 1978년 1~4월 간에는 1,312건의 등록된 특허중 외국인에 의한 특허수는 948건으로서 전체의 72.3%를 차지하는 급격한 上昇率을 보이고 있다.

〈表 2〉 特許權出願件數

	總出願 (%)	內國人 (%)	外國人 (%)
1976年 1月~12日	3,261 (100%)	1,436 (44%)	1,825 (56%)
1977年 1月~12日	3,139 (100%)	1,177 (35.5%)	1,962 (62.5%)
1978年 1月~ 4日	1,312 (100%)	364 (27.7%)	948 (72.3%)

한편 外國人特許出願은 先進諸國內에서와 마찬가지로 個人에 의한 출원보다는 企業體 특히 大企業 즉 多國籍企業에 의한 특허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國際技術市場

에서의 기술의 主販賣者 역시 이들 다국적기업들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특허출원하는 動機와 그 영향을 糾明하기 위해서는 이들 다국적기업들의 對開發途上國의 經營, 販賣, 또는 輸出戰略 특히 기술이전에 대한 戰略糾明이 필요하다.

技術販賣者의 대개발도상국의 技術移轉動機는 導入國의 경제개발 또는 工業化의 촉진에 있기 보다는 利潤의 極大化, 市場占有率의 擴大, 輸入國의 保護貿易政策에 의한 關稅의 迴避, 또는 稅制上的 利點利用 등을 통한 販賣者 自身의 企業目標追求에 있다. 그러므로 기술판매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도상국에 適正한 勞動集約的技術 또는 資本節減形技術의 提供이나 도입자의 생산능력을 고려한 生産工程, 機械裝置 등의 改良에 대하여 關心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기술판매를 통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Package形態로 기술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Package화된 기술은 두가지 차원에서 생각할수 있는데 첫째는 Turnkey-plant형태로써 經濟的妥當性 調査로부터 建設, 設計, 製造, 生産 및 試運轉에 이르기까지의 全技術의 要素를 기술판매에 包含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經營, 生産, 販賣 및 財務 등의 非技術的 要素까지 기술이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後者의 경우 기술판매자는 순수 기술판매로부터 取할 수 있는 이윤에 이와같은 경영 및 생활활동에의 직접참가나 資本財貸與에 의한 이윤도 획득할수 있다. 그러나 도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기술을 分解(Depackaging)하여 구입하는 것이 기술도입의 效果를 증대할 수 있는 方法이라고 볼 때 기술판매자와 導入者間에는 相衡되는 利害關係가 엮힐 수가 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기술판매자는 자신의 企業戰略을 合理化시키는 데에 특허등록을 이용하게 된다.

### ③ 技術移轉과의 關係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特許權을 획득한 外國企業들은 이 특허를 이용한 實際的인

생산 노는 기업활동을 忌避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아니라 第三者인 內國人 또는 內國企業에 特許實施許諾에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南美콜롬비아의 경우 1970년 한해동안 3,513건의 등록된 특허중 겨우 10%만이 實際同國에서 기업화 되었다. 페루의 경우 1960년~1970년 사이 無作爲抽出한 4,872건의 등록된 특허중 실제로 同國에서 開發 商業化된 件數는 1.1%에 해당되는 57건에 불과하였다. 換言하면 외국인 특허출원에 의한 기술도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効果的인 기술도입 또는 기술도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先進技術의 模倣 및 개량에 있다. 그러나 도입된 기술이 특허화된 경우 合法的인 獨占權의 인정으로 도입자에 의한 모방을 통한 기술의 吸收는 사실상 不可態하게 된다.

특히 특허권실시 또는 특허가 포함된 기술도입의 경우 効果적인 기술도입의 문제는 크게 挑戰받고 있다.

特許權實施許與는 特許不能한 Know-How 또는 未特許技術이 共存하여 도입되는 수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 기술도입자가 技術技能의 부족으로 특허기술허여만을 가지고 實際生産活動이 불가능하여 Know-How를 併行하여 도입하는 경우이고 둘째, 技術提供者(導入先)가 특허권실시만을 허여치 않고 그와 관련된 미특허기술이나 特許化할 수 없는 産業秘方 또는 機械裝備의 구입도 強要함으로써 他意로 도입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특허와 이것을 이용한 기술 판매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볼 때 前述한바 같이 非技術要因을 포함시킬 수 있는 機會가 되며 순수기술의 판매를 통하여 얻는 이윤보다 많은 이윤을 이들의 활동(資本貸與, 經營參與, 機械裝備販賣等)을 통하여 얻게 되는데 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불필요한 經營干涉 또는 過多한 技術代價의 支拂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④ 制限條件에 의한 技術導入의 沮害

기술도입이 특허실시권허락을 포함할 경우 기술판매자는 도입자에게 보다 까다로운 制限條件을 강요하는 수가 많다. 獨寡占의 합법적인 인정인 특허등록을 통하여 기술판매자는 생산된 제품의 種類, 生産量, 販賣地域, 販賣價등을 明細化시킨다. 개발도상국이 주로 輸入하는 기술은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先進國의 많은 企業體로부터 選定購入할 수 있는 기술이 대부분을 차지 한다. 따라서 기술도입자는 協商과 Bargaining에 의하여 技術價格 및 提供者의 要求條件을 調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對象技術이 특허등록된 경우 기술제공자의 一方의인 制限事項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南美의 콜롬비아의 경우 外國人合資會社로써 纖維, 化學 및 醫藥品製造業體中 85%가 이와같은 제한조건을 隨伴하는 不公正去來를 강요 당하고 있다. 칠레, 페루, 에쿠아도르 및 볼리비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기술이전의 파급효과 및 輸出增加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보다 심한 경우는 특허권실시에 대한 契約없이는 그것이 필요 또는 불필요를 不問하고 一切의 기술 판매를 拒否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허락때 기술제공자가 하나의 전략수단으로써 사용하는 제한조건 具體의內容은 價格制限이며 價格固着 및 價格差別, 輸出地域制限, 原材料部品購入義務化, 競爭品取扱 또는 競爭技術採用制限등으로 나타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Over-pricing으로써 특허등록을 통한 獨占의 權利의 획득후 기술이전이나 생산활동을 기피하면서 그 제품가격을 人爲的으로 昂騰시키는 것이다. 表 3은 1968년 南美의 콜롬비아가 特許化된 의약품원료 구입가격과 國際時勢와의 比較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 같이 同國內의 시세는 국제시세에 比較하여 43%로부터 Valium의 경우 무려 6,584%, 즉 국제시세의 65배나 비싼 값으로

# 特 輯

〈表 3〉 콜롬비아의 實例

品 名	F. O. B. 價格(\$)	Over-Pricing %
Terramycin anfotera	46,000	300
Terramycin chlorhydrate	271,000	257
Dexametasone phosphatisodic	30,000	435
Hydroclorotiazide	14,000	1,400
Indomethacin	80,000	417
Metimazol	3,311	3,460
N. Pinolidine Metilteetracycline	224,412	686
Substance of Valium	66,500	6,584
Dexametasone alcohol	74,250	293
	9,980	43
	57,750	400
Chlordiasepoxide	62,625	5,647
Ethionamide	9,000	875
Chlorpromazine	26,760	733
Guanethidine sulphate	57,500	360
Frtsemide	102,442	1,070

〈表 4〉 멕시코의 實例

品 名	平均 國際 時勢	멕시코의 輸入 價格 (1968)	Over-Pricing %
Tetracycline	24.71	61.02	146.9
Oxytetracycline	30.04	43.2	43.8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	30.00	455.44	1,418.1
Chloramphenicol succinate	31.9	67.92	112.9
Chlordiazepoxide	19.68	224.97	1,043.1
Diazepam	37.76	668.05	1,669.2
Progesterone	120.00	595.44	396.2

※ U.S. \$/kg

판매되고 있다. 表 4는 1968년 멕시코내의 의약품 시세와 국제시세와의 비교를 나타 내는 것으로서 Chlortetra-Cycline Hydro-Chloride의 경우 국제시세와 비교하여 무려 14배의 비싼 값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 특허 등록된 제품의 價格引上이 어느정도인가를 나타 내고 있다.

## ⑤ 結 論

발명활동은 歷史적으로 個人爲主로부터 기업

중심으로 變遷되어 왔으며 발명의 결과로써 취할 수 있는 특허출원도 기업의 目標追求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특허출원하는 다국적기업의 동기도 그 기업들의 汎世界的인 經營 및 販賣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외국기업들에 의한 국내의 특허등록을 외국에서 어떠한 기술이 어떠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가 하는 諸般最新趨勢와 情報의 所在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독점권의 인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특허를 保有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특허를 이용한 생산 활동이나 기술이전을 意識적으로 처리하며 關世상의 諸般法規를 회피하여 完製品의 輸出 또는 原材料部品の 價格양등을 통한 暴利를 취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每年 外國人特許出願이 顯著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현상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기술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특히 技術保有者의 기술의 武器化傾向이 高潮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外國特許權者가 獨占的權利만을 요구하고 實際的인 製造活動을 履行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諸般事項을 組織적으로 分析檢討할 필요가 있겠다. ♣

創刊13年! 定評있는  
唯一한 韓國經濟의 總覽!

'78 年版 韓國經濟年鑑

別冊 / 韓國財界人士錄

絶讚裡配布中!

全國經濟人聯合會 發刊

서울特別市 鍾路區 貫鉄洞10

☎ 73 8853 73 1090 75 4137 74 5317